#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7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윤재갑·문진석·민홍철

설 훈 · 신정훈 · 위성곤

이개호・최강욱・홍문표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에 대한 면허의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직접 경작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이상 기후변동 등으로 인하여 농작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 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 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제4 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② (생 략) 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 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 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 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 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 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 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 득세를 추징한다.

#### 1. ~ 4. (생략)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③ (생 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u>.</u>           |
|--------------------|
| 1. ~ 4. (현행과 같음)   |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
|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b>4</b>           |
|                    |
|                    |
|                    |
|                    |
| <u>20</u>          |
| <u>26년 12월 31일</u> |
| <u>,</u>           |
|                    |
|                    |
|                    |
| ·                  |